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폭염 및 폭염작업 정의 신설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의 대상이 되는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했다. 체감온도 31℃는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의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온도이며,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72.7%가 31℃ 이상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2> 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 등에 대한 조치

폭염작업(31℃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가 일하는 주된 작업장소에 온·습도계를 비치하여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한 후 당해연도 말까지 보관해야 한다. 다만, 옥외 이동작업 등 작업환경의 특성상 체감온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법」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는 깨끗한 음료수 등을 충분히 비치하도록 강조하는 한편, 폭염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리도록 했다.

만약, 폭염작업 중인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방관서(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온열질환 의심자가 방치되어 사망 등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

<3> 폭염작업 시 온열질환 예방 조치

실내 또는 옥외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할 경우,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하도록 했다.

폭염작업이 실내인 경우 ①냉방 또는 통풍을 위한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 ②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③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다만, ①온도·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거나 ②작업시간대 조정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폭염상황이 계속되면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폭염작업이 옥외인 경우는 ①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②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작업시간대 조정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폭염상황이 계속되면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 해야 한다.

<4> 폭염작업 시 휴식시간 부여

근로자가 체감온도 31°C 이상의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내·옥외 모두 적절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기상청 폭염특보에 해당하는 기준 온도인 33°C 이상일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연속공정 과정에서 후속 작업의 차질, 제품 품질의 저하 등 작업 성질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휴식 부여 대신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나 보냉장구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현 행〉

〈신 설〉

■ 사업주의 보건조치	▪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염)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 ◦ (폭염작업) 폭염으로 인해 측정한 체감온도가 31°C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
◦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시 적절한 휴식 부여	▪ 사업주의 보건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작업장소에 온도·습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 상시 비치 - 폭염·고열작업 시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 주지 ② 31°C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①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②폭염·고열 작업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 의심 시 소방관서 등에 신고 - (실내) ①냉방·통풍을 위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②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③적절한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조치(단, ① 또는 ②의 조치에도 폭염작업 계속 시 ③ 조치) - (옥외) ①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②적절한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조치(단, ①의 조치에도 폭염작업 계속 시 ② 조치) ③ 33°C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부여 - (예외) 연속공정 등 작업 성질상 휴식시간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 지급·착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시 ④ 소금과 음료수 등을 ‘충분히’ 비치 명확화
◦ 땀을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음료수 등 비치	

* 산안법 제39조제1항제7호의 시행으로 보건조치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적용

참고2

소규모 사업장 재정지원 품목(예시) * 재정지원 사업공고('25.2.5. 예정)

물품	사진	설명
온·습도계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 교정 거친 제품
①이동식 에어컨 ②산업용 선풍기	①  ② 	① 국소냉방장치 ② 통풍장치
냉각조끼, 냉각의류	  	찬공기, 액체, 얼음 등 냉매 함유
그늘막		건설 등 옥외 작업장 지원
산업용 냉풍기 (중앙식, 개별식)	 	냉각된 공기를 공급하여 작업장 온도 감소
제트팬	 	
실링팬		작업장의 공기 흐름 원활화

참고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약) <u><신 설></u>	제558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폭염”이란 근로자에게 열경련 · 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 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 도의 기상현상을 말한다.
제559조(고열작업 등) ① ~ ③ (생 약) <u><신 설></u>	제559조(고열작업 등)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한 온도 (이하 “체감온도”라 한다)가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 간 작업을 말한다.
제560조(온도 · 습도 조절) ① (생 약) <u><신 설></u>	제560조(실내 작업에서의 온도 · 습 도 조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폭염작업이 실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에 도 불구하고 폭염작업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

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2. 작업시간대의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3.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생략)

제562조(고열장해 예방 조치) (생
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562조(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에
대한 조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
분과 같음)

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이 폭
염작업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체감온도를 확인하기 위
하여 근로자의 주된 작업장소에
온도·습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
계 등의 기기를 상시 갖추어 두어
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열 또는 폭염작업
에 따른 온열질환의 증상 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내
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된 작
업장소의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당해연도 12
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고열 또는
폭염작업 중인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소방관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를 포함한다)에 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2.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 설>

제566조(휴식 등) ① -----
-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

----.

<삭 제>

<삭 제>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옥외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폭염작업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시간대의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2.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신 설〉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어
야 한다.

③ 제2항 및 제560조제2항에도 불
구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상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폭염
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
3°C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
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
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다만, 연속공정 등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
란하여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
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
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하는 등
으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 충분히 갖추어 ----- .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3의2] <신 설>

체감온도의 측정
(제559조제4항 관련)

1. 체감온도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관련 별표1의 체감온도로서 기상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하여 산출하는 온도를 말한다.
2. 체감온도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주된 작업장소의 바닥 면으로부터 약 1.2~1.5미터 높이에서 측정한다.
3. 다만, 제2호에 따른 체감온도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법」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다.